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전매체) 5. 30(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동제의 확산을 지원하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등 마련
-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등 규정
- 10.4일 연동제 본격 시행을 위한 의무 관련 사항은 6월 중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상담(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7.4일 법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7.4일 /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10.4일 시행

②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취소 기준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③ 그 밖에 약정서 기재사항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10.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하여 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최형선 (044-204-79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4조 (생 략)	제14조의2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4조의2(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생 략) ②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3(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1. 물품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제14조의4 (생 략)	제14조의4·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2. (생 략)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제14조의3---------- 2.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3과 ----.

[별표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6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법 제22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